

이사회규정

제정 2002년 01월 01일
개정 2014년 12월 19일
개정 2019년 03월 28일
개정 2021년 03월 30일
개정 2021년 04월 30일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거나,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의장을 정한다.
- ④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 3 장 회 의

제5조 (소집)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전에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의결방법)

- ① 이사회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의장은 이사회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제7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안건
 2. 재무제표의 사전승인
 3. 신주발행 사항에 관한 결정
 4.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계획
 5. 준비금의 자본전입
 6. 대표이사의 선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7.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8. 이사회규정의 제·개정
 9.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10. 자기자본 10% 이상의 시설투자 및 시설외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11. 자기자본 10% 이상의 대규모 자산의 차입
 12. 매출액 10% 이상의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 해제·해지
 13. 매출액 10% 이상의 제품수거 및 파기
 14. 매출액 10% 이상의 생산활동중단
 15. 자산총액 10% 이상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 및 양수·양도
 16.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0% 이상의 영업의 양수·양도
 17.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행하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 보증, 출자를 제공 또는 거래
 18. 제17호와 관련하여 이미 공시한 사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의 변경
 19. 자기자본 5% 이상의 출자 및 출자처분

20. 자기자본 5%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21. 자기자본 5% 이상의 금전대여 및 선급금 지급
 22. 자회사의 설립
 23.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법령상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 제7조의2 각 호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결정과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7조의2 (특별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 조에 따른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1. 주식 등(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거나 달리 신주발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 포함)의 발행
2.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유상 또는 무상감자 기타 자본의 감소
3. 주식의 병합, 분할, 주식의 종류의 변경, 수권주식총수의 변경, 액면금액의 변경 등 주식 관련 권리의 변경
4.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거나 달리 신주발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의 부여 또는 직원들에 대한 우리사주의 부여 또는 지급
5. 해산, 청산,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의 폐지 또는 중단
6. 다른 회사와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7. 영업 또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의 체결, 중요한 변경 또는 해약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또는 채권단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의 개시 신청
10. 건별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자금 차입(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차입을 포함함), 타인을 위한 보증, 담보의 제공, 연대 채무의 부담이나 금전대여
11. (i) 거래별 지급, 수령, 지출 등의 금액이 건별 금 이백억(20,000,000,000)원 이상인 계약, (ii) 회사의 재무제표상 평가액 또는 거래별 지급, 수령, 지출 등의 금액이 건별 금 이백억(20,000,000,000)원 이상인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의 구매, 처분, 임대차 또는 리스에 관한 계약, (iii) 자본금 또는 투자금액이 건별 금 이백억(20,000,000,000)원 이상인 주주들 또는 투자자와의 투자, 손익, 매출, 비용, 채무를 분담하는 동업, 합작, 파트너쉽, 전략적 제휴 계약의 체결, 중요한 변경, 해제 또는 해지
12.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행하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 보증, 출자제공. 다만,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정상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SK텔레콤 주식회사와의 정산거래 포함)는 제외함

제 4 장 기 타

제8조 (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전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네오스페이스 유한회사가 지명한 자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기자본 등)

본 규정 제7조에서 정한 자기자본, 자본금, 자산총계,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연결기준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특례조항)

본 규정 제7조 제1항 제19호 ~ 제21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연결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가 2,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 10%로 변경하여 적용한다.